



유네스코
3관왕



세계자연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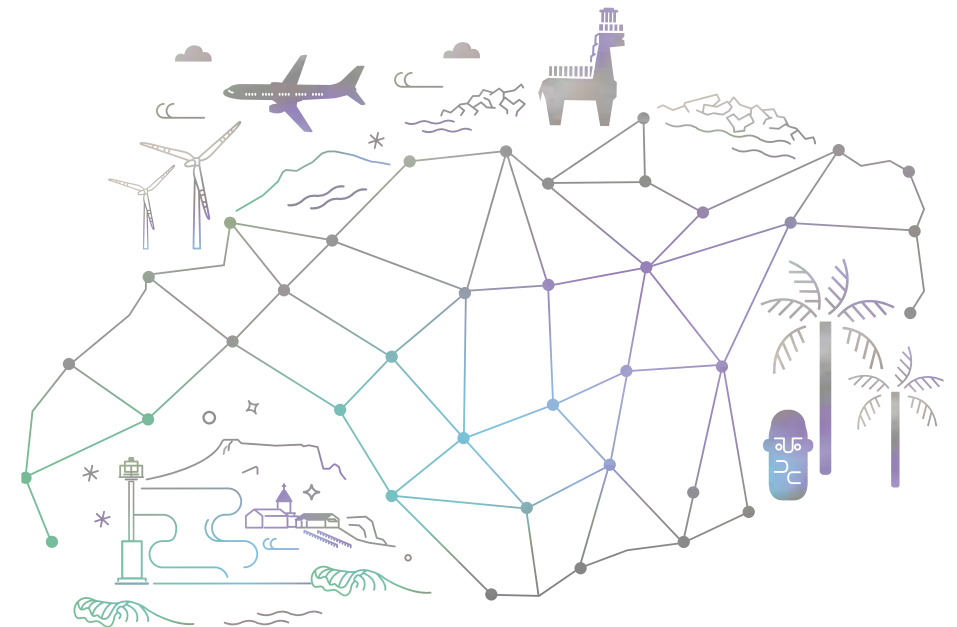
세계
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제주투자 지원제도

제주투자 지원제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Tel 064) 710-3371~5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투자 환경

한국, 중국, 일본의 중심에 있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

- 비행거리 2시간 내 인구 백만 명 이상 국내의 도시 60개 위치
- No-Visa(180개국), No-Tax를 기본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경제규모의 확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GRDP 기준)

- 지역내총생산(2017 기준) : 18조 227억 원
1인당 GRDP : 28,420천 원(전국평균 33,657천 원)
- 경제성장률(17년 잠정) 4.9%(전국2위)

동북아시아의 교육 허브 영어교육도시 조성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국제학교 설립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 구분 | KIS Jeju | KIS High School | NLCS Jeju | BHA | SJA Jeju |
|---------------|---|--------------------------|----------------------------|-----------------------------|--|
| 학급 및 정원수 | 37학급 (PK-8년) 782명 | 20학급 (9-12학년) 480명 | 74학급 (N-13학년) 1,508명 | 60학급 (JK-12학년) 1,212명 | 68학급 (PK-12학년) 1,254명 |
| 교육과정 | 미국 AERO (American Education Reaches Out) 교육과정 | | 영국 NLCS 교육과정 | IB 교육과정 | 미국 분교 교육과정 및 AP (대학과정 선이수) 프로그램 |
| 건축면적 (연면적) | 10,692㎡ (28,899.65㎡) | 10,658㎡ (31,246㎡) | 32,917㎡ (96,609.53㎡) | 32,819.84㎡ (70,211.38㎡) | 21,387㎡ (57,832㎡) |

차등적 특례가 적용되는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제도 운영
- 차별화된 제도 활용 및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산업모델 추진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관광도시



- 관광객 수(2018.12) 1,431만 명 (외국인 122만/ 내국인 1,309만)
- 관광수입 5.7조 원 (2017년 잠정)
- 글로벌 에코 플랫폼 구축
 -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허브 구축: 2030년까지 도내 등록차량 75%를 전기자동차로 대체

살고 싶은 제주 창의적 근무환경을 찾아 기업 이전



- 직장인이 살고픈 꿈의 도시 1위(18.4)
-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시도지사 종합평가 최우수 "SA" 달성(4년 연속)
- 주민만족도 64.4% 전국 2위(17)
-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전국 1위
- 문화예술예산 3%대 달성(18)

제주 균형발전의 4대 성장축 핵심 프로젝트 추진

북부권역
제주공항 확충, 신항만 건설

남부권역
강정크루즈터미널 건설, 혁신도시



서부권역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동부권역
제2공항 건설

투자 입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사업위치 제주시 월평동
- 조성면적 848,000㎡
※ 산업시설용지 394,000㎡
- 사업기간 '16년 ~ '22년
- 유치업종 IT·BT·CT·ET, 연구시설 등



헬스케어타운

- 사업위치 서귀포시 동흥동 및 토평동
- 조성면적 1,539,013㎡
- 사업기간 '08 ~ '21
- 유치업종 의료서비스업, 의료기관·시니어타운 개발 및 운영,
헬스케어 관련 사업 (IT, BT 등 활용한 검진, 재활 관련 투자의향자)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업을 이전(설립)하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보조금 지원

- 입지지원 부지비용 및 임대료 지원
- 투자지원 건축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 지원
- 교육지원 직원의 교육훈련비 지원



세제 지원

- 국세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감면
-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면제



자금(융자) 지원

- 이전기업,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해 장기 저리 대출 지원



행정지원

- 부지 매입·건물 임대 안내
-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도권 기업 지원 |

지원 요건

0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
02. 제주도로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
03. 기존사업장(제주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투자 수행 요건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제주도로 이전할 것
2.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할 것
3.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 지원특례

- 가.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투자 금액의 지원비율을 2% 가산 지원
- 나.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투자사업장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대표산업, 첨단업종인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가.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
 - 나.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
- cf. 폐건물을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입하는 폐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 범위

| 보조금 | 입지지원 | 설비투자지원 |
|------|--|-----------------|
| 대기업 | 해당 없음 | 설비투자 금액의 11% 이내 |
| 중견기업 | 토지매입금액의 20% 이내 ※ 단, (기존사업장 면적) x 5 x (투자대상 부지 매입단가)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19% 이내 |
| 중소기업 | 토지매입금액의 40% 이내 ※ 단, (기존사업장 면적) x 5 x (투자대상 부지 매입단가) 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24% 이내 |

-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 입지·설비투자보조금이 일반지역 대비 최대 10%p 우대 지원
- ※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등) 투자금액은 건설투자·기계장비 구입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투자 금액의 지원비율을 2% 가산 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

증설이란?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

지원 요건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2.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투자 수행 요건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사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3.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지원 범위

| 보조금 | 입지지원 | 설비투자지원 |
|------|-------|-----------------|
| 대기업 | 해당 없음 | 설비투자 금액의 11% 이내 |
| 중견기업 | | 설비투자 금액의 19% 이내 |
| 중소기업 | | 설비투자 금액의 24% 이내 |

※ 입지·설비투자 보조금이 일반지역 대비 최대 10%p 우대 지원

※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등) 투자금액은 건설투자·기계장비 구입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수도권 외 이전기업 지원 |

지원 요건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일 것
단,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 전략산업)인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도 지원 가능

지원 범위

| 보조금 | 지원내용 | 설비투자지원 |
|---------|--|--------|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액의 25% | 예산액 |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 금액의 10% | |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월 50만 원 이내 | 1억 원 |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교육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월 50만 원 이내 | |

※ 이외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준용

|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

지원요건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일 것

지원범위

| 보조금 | 지원내용 |
|-------|--|
| 수출보조금 |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단, 제주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 국내복귀기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

국내복귀 기업의 지원요건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국내복귀 기업의 투자수행 요건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2.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개성 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원요건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 지구에 설립한 기업의 남측 모기업일 것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개성 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투자수행 요건

1.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2. 제주도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 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지원 범위

| 보조금 | 입지지원 | 설비투자지원 |
|------|-----------------------------------|---|
| 대기업 | 해당 없음 |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은 13% 이내) |
| 중견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국가의 지원은 5억원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은 21% 이내) |
| 중소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국가의 지원은 5억원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은 26% 이내) |

|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 |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 제1호 가목, 라목, 바목에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가. 영화,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바.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정보통신산업이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 전기 통신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원 요건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고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일 것

지원 범위

| 보조금 | 지원내용 | 한도액 |
|----------|--|-------------------------------|
| 건물임대료 | 상시고용인원 10인 초과 시 3년간 50% 이내 | 5억 원 이내 |
| 시설장비 구입비 | · 상시고용인원 10인 초과 시 30% 이내 · 상시고용인원 30인 초과 시 40% 이내 · 상시고용인원 50인 초과 시 50% 이내 | 3억 원 이내 4억 원 이내 5억 원 이내 |
|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인(도민)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월 100만 원 이내 최근 6개월 평균임금의 70% | 3억 원 이내 |
| 교육훈련 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시 고용인원 1인 당 6개월 범위 월 100만 원 이내 실소요비용 | 5억 원 이내 |



언제 신청하나요?

|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

| 구분 | 신청시기 |
|---------|--|
| 설비투자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입지 + 설비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 폐건물 매입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경매의 경우 매각 결정일)부터 6개월 |

- ※ MOU체결 :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 (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신청일)
3. 폐건물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 체결일(경매의 경우 매각결정일)
cf. MOU는보조금 신청 이전 3년이 경과하면 안 됨

|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 |

| 구분 | 신청시기 |
|----------------|---|
| 건물임대료/ 시설장비구입비 | 제주도내 관할세무서 사업자 등록 및 이전등기일 (제주지점 설립 포함)로부터 1년 이내 |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 사업개시 후 5년 이내 |

보조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①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은 산업부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 지급
※ ② 수도권 외 이전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은 공모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혹은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 지급



세제 및 금융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자금(용자)지원

국세

| 현재지역 | 이전지역 | 이전대상 | 이전기한 | 감면내용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외 | 3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공장, 본사 | 2020. 12.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법인세 4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서귀포시 법인세 6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2년 이상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공장 | | |
| 대도시권 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본사 | | |
| | 대도시권 외 | 공장 | | |

지방세

| 구분 | 관련근거 | 대상 | 감면내용 |
|---------------|----------------|---|--|
| 취득세 /등록면허세 | 도세감면조례 제14조 |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내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 |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9조 | 과밀억제권역(수도권) 내 지역의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021.12.31.까지 면제 |

| 구분 | 관련근거 | 대상 | 감면내용 |
|-----|----------------|--|--|
| 재산세 | 도세감면조례 제14조 |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
| |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79조 | 과밀억제권역(수도권) 내 지역의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그 다음 3년간 50% 경감) |
| | 도세감면조례 제15조 | 제주도에 본점을 둔 기업이 과세대상 물건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적으로 3년 이내에 1년이라도 100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한 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경감 |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

- 지원대상** 제조업, 벤처기업, 성장유망 중소기업, 도소매업 등 41개 업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2천만 원~5억 원 이내(업종별 차등, 매출액 기준)
 - 상환방식별 대출기간
 - 일시상환: 각 회차별 2년(총 3회 차, 6년)
 - 분할상환: 5년 이내(2년 거치 후 균등분할상환)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

- 지원대상** 제주이전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9개 업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90억 원(시설자금+운전자금, 업종별 차등지원) 이하
 - 대출기간: 3~10년 이하(대출금액별 차등, 거치기간 포함)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사항

| 이전기업 · 신증설 · 국내복귀기업 |

- 사업이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 영위
 - 사업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고용 유지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대된 토지, 건물,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불가
 -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 허위·부당한 방법, 사후관리기간 미이행 시정명령 및 보조금 환수
- ※ 사업이행기간: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

|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 |

-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영위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받은 대상자 3년 이내 해고 금지